

1. 기소장 목차

서장(이라크공격에 이른 경과)

- 제1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 제2 이라크전쟁에 이른 역사
 - 1 이라크 前史
 - 2 걸프전쟁
 - 3 경제제재에 의한 희생
 - 4 미국의 「비행금지구역설정」과 공중폭격

제1장 이라크공격

- 제1 미국의 이라크공격
 - 1 이라크공격의 실행
 - 2 이라크공격의 이유는 인정되는가?
 - 3 미국의 이라크공격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 4 부시대통령, 블레어수상의 죄
- 제2 민간인피해
 - 1 무차별폭격에 의한 민간인 살육
 - 2 특수병기~주로 클러스터폭탄에 의한 민간인공격
 - 3 상관 및 공범자의 책임
- 제3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피해
 - 1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
 - 2 열화우라늄탄이 인체에 주는 두려워할만한 악영향
 - 3 열화우라늄탄에 의한 환경오염
 - 4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의 위험성 인식
 - 5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은 명백한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 제4 보도기관에의 공격
 - 1 파레스티나호텔에의 공격
 - 2 알자지라, 아부다비TV에의 공격
 - 3 보도기관에의 공격에 관해
 - 4 죄

제2장 이라크점령

- 제1 CPA, CJTF7을 통한 미영군에 의한 이라크 점령
 - 1 미영군에 의한 이라크 점령
 - 2 미영군에 의한 이라크 통치
- 제2 점령군의 의무불이행

- 1 미영군의 책임·의무
- 2 미영군이 점령에 수반하는 책임·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
- 제3 이라크국민의 생활파괴
- 제4 인도지원활동의 저해
- 제5 자원의 수탈
 - 1 미국기업에 의한 「부흥사업」의 독점
 - 2 헬리버튼사에 의한 거액의 이익의 획득
- 제6 점령의 계속
- 제7 침략의 죄 해당성
 - 1 점령은 침략행위
 - 2 인민자결권의 침해
 - 3 안보리의결 1483, 1511, 1546과의 관계
 - 4 죄

제3장 피억류자애의 고문

- 제1 위법한 민간인억류
- 제2 아브그레이브 형무소에서의 고문
 - 1 아브그레이브 형무소
 - 2 고문의 구체적내용
 - 3 「고문」인가 「학대」인가
 - 4 조직적인 고문
 - 5 다른 형무소에서의 고문
 - 6 죄
- 제3 여성 및 아이들에 대한 고문
- 제4 부시대통령의 형사책임

제4장 팔루자의 학살

- 제1 들어가며
 - 1 前史
 - 2 사건에 이른 경위
- 제2 학살사건의 발생
 - 1 사건의 발생과 주민의 저항
 - 2 정전(停戰)과 정전 파기
 - 3 일본정부와 영국정부의 대응
 - 4 미군의 철퇴(撤退)
 - 5 새로운 학살
- 제3 미군의 범죄
 - 1 무차별폭격
 - 2 저격병에 의한 무차별 살육
 - 3 문화재에의 공격
 - 4 병원, 구급차에의 공격

제4 주민의 저항권에 관해

- 1 「무장세력」은 어떤 사람들 이었나
- 2 국민은 위법한 침략에 대한 저항권을 가진다
- 3 일본의 보도의 잘못
- 4 일본의 책임

제5 마치며

- 1 부시대통령의 죄
- 2 고이즈미수상의 죄

제5장 고이즈미수상의 범죄

제1 부시대통령의 침략의 죄에 대한 방조의 죄 (이라크 전쟁 개시 전부터)

- 1 이라크 전쟁 개시 전부터의 테러특조법의 방조
- 2 고이즈미수상의 미영군지지의 발언등
- 3 죄

제2 위법한 침략에 대한 공동정범 (이라크 전쟁 개시 후)

- 1 이라크 특조법 성립과정 및 그 내용에 관한 문제점 (자위대파견전)
- 2 자위대파견후
- 3 고이즈미수상의 죄

제3 위법한 점령에 대한 방조

- 1 점령에의 재정지원 (對이라크 ODA)
- 2 고이즈미 수상의 책임

제4 헌법질서의 파괴

- 1 일본국헌법 9조의 내용
- 2 일본국헌법 9조의 의의
- 3 자위대의 이라크에의 파병은, 「무력의 행사」를 금한 헌법9조에 반한다
- 4 자위대의 이라크에의 파병은 「교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9조에 반하고 있다
- 5 고이즈미 수상의 책임

제5 재일미군기지의 달성한 역할과 범죄성

- 1 이라크 전쟁 개시전부터의 재일미군기지의 이라크에의 관여
- 2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재일미군기지의 관여
- 3 고이즈미 수상의 죄

결어

II. 민중법정 Q&A

Q1 민중법정이란 무엇입니까?

A 민중법정은, 평화를 바라는 민중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를 위한 법정입니다. 민중이 민중을 체포하거나 투옥하는 「권력법정」과는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법정운동의 시도입니다.

민중법정의 역사는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개최됐던 「러셀」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북폭」이 격화(激化)했던 1966년, 철학자 러셀이 제창하고, 철학자 사르트르를 집행재판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던 것이 「러셀법정 (러셀·사르트르법정)」입니다. 이것은 지식인에 의한 민간법정의 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겔프전쟁」에 즈음하여, 부시대통령(부친)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미국원사법장관인 험지클락이 주장한 「클락법정」이 유명합니다. 클락법정은 연속공청회방식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2000년 12월에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제를 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은, 동경재판 다시하기라는 컨셉을 기초로 전시성폭력문제의 국제법에 의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민중법정이란 무엇인가 미리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가는 법정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확인해두어야만 하는 것은 「민중법정은 권력법정과는 전혀 다른 법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민중법정에는, 권력에 의한 뒷받침이 없습니다. 즉, 국법상의 정당성도 없지만 국제법상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재판도 아니지만 국제기관에 의한 재판도 아닙니다. 민중법정은 권력에 의한 정쟁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민중이 모여 제멋대로 여는 법정입니다.

둘째로, 민중법정에는 강제력도 구속력도 없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도 가택수색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법정에 구인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내려도 감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수감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민중법정은 국가권력이 행하는 것과 같은 린치재판이 아닙니다. 민중법정은 국가가 법적정의를 업신여기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적을지라도 지켜질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일 것입니다. 사실과 논리에 기초하여 국가나 국제기관에 국제법을 지키게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소란상태에서 행해지는 「인민재판」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Q2 민중법정의 진행방식은 어떠합니까?

A 민중법정을 어떻게 진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민중법정자체, 그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러셀법정, 클락법정, 여성법정이라는 뛰어난 전례가 있지만, 민중법정이란 함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해야 적당한가에 관해서 정리된 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라크 국제전범민중법정 ICTI는 지금까지의 민중법정을 배워가며, 새로운 민중법정

운동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충분한 결론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ICTI는 지금까지의 민중법정의 계보를 이어나가며 새로운 민중법정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프가니스탄 국제전범민중법정 ICTA에서 행해진 연속공청회방식입니다. 이것은 클락법정에서 배우면서, 그 위에 목적의식적으로 재구성하고, 각지에서 공청회를 통한 증거 수집과 분석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ICTA는 동경, 오사카, 치바, 三多摩, 카나가와, 톳카이, 교토, 효고, 히로시마, 오키나와, 이슬라마바드(중지), 필리핀, 학생, 枚方, 오사카대학, 각지의 민중의 노력으로 증거를 축적해 왔습니다.

둘째로,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배워, 국제법의 이론을 철저히 추구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침략의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의 해석과 관해서 현대국제법의 수준에 입각한 논의를 전개할 것입니다.

셋째로, 민중법정에서는 전례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ICTA에서는 절차증거규칙을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응하는 규칙입니다. ICTI에서도 준비하겠습니다.

민중법정은 민중이 스스로의 창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법정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나 국제기관에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에 철저히 근거하면서 민중자신이 지금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는 장입니다. 그 논의를 통해 민중법정의 진행방식을 계속해서 의논해 갑시다.

Q3 민중법정과 권력법정이란

A ICTA는 민중법정입니다. 그에 반해 동경 지방 재판소나 오사카 지방 재판소라고 하는 재판소에서 행해지는 법정은 권력법정입니다. 양자는 다만 다른 법정이라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 입각점은 전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그 원리는 반대극에 있습니다.

여기서 권력법정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국가의 주권에 기초해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의 재판소인 것입니다. 혹은, 뉘른베르크재판, 동경재판, 구 유고슬라비아법정과 같이, 국제기관에 의한 권력법정도 있습니다. 권력법정이라 함은, 자음과 간은 특징을 가진 법정입니다.

첫째로,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국가권력이나 국제권력에 의한 정당화근거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가택을 수색하거나 피고인을 법정에 구인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형무소에 수감하거나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무를 말하도록 두지 않는 실력행사를 하는 법정입니다.

셋째로, 권력법정은 계속적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정입니다. 거기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자는 경원 또는 배제됩니다.

그에 반해, 민중법정에는 법률상의 정당화근거는 없습니다. 민중법정의 정당화근거는 법정을 짊어지는 민중자신의 평화와 정의에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민중법정에는 강제수사의 권한도 없고, 만약 유죄라 해도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ICTI규정에는 형벌의 규정도 없습니다. ICTI는 이라크에서 부시, 블레어나 고이즈미의 전쟁범죄를 심판하는 목적이 한정되고 시간이 한정된 법정운동입니다.

Q4 ICTI에는 왜 변호인이 없는 것일까요

A _____ 지금까지의 민중법정은 러셀법정에서도 클락법정에서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도 변호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다를지도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준비단계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ICTI도 그 논의에 따랐습니다.

첫째로, 민중법정에는 피고인에 변호인을 붙여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신의 자유나 적정절차의 관점에서는 권력법정에 있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체포, 구류, 강제수색이 행해지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 당하게 되고,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무소에 수용됩니다. 민중법정에서는 피고인에 이러한 신병구속등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피고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실력행사는 일절 없습니다.

둘째로, 적정절차 가운데,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관점에 관해서는 방어권의 기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을 송부하고 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피고인과 대리관계가 없는 변호인을 특별히 법정이 맡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민중법정의 심리에서, 변호인의 활동을 상정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ICTI피고인 조지부시대통령, 블레어수상, 고이즈미수상등의 입장은, ICTI자체를 일절 인정하지 않음은 말할필요도 없습니다. ICTI를 인정하지 않는 부시, 블레어나 고이즈미에 ICTI에서 변호인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소송의 논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ICTI는 변호인을 대신하여, 아미카스큐리에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법정에서 채용되어 온 「법정의 친구」로서의 전문가의 감정이나 증언입니다.

원래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법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형사소송은 재판하는 자와 재판받는 자의 이면구조였습니다. 에도시대의 부교(奉行)에 의한 재판드라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사자(검사와 피고인)와 재판소의 삼면구조는 근대적인 법정에서 겨우 확립한 것입니다.

둘째, 근대법에서도 그 기본형태는 본인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그 외의 전문화에 따라서 변호인제도가 이뤄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에서도, 일부의 형사재판(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된 중요사건) 이외는 변호인이 있는 쪽이

넷째, 구 유고슬라비아법정에 있어 밀로셰비치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만, 변호인없이 법정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호인이 불가결하다」라는 생각은 단순한 오해입니다. 문제는 민중법정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우리 ICTI가 어떠한 법정의 본연의 자세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입니다. ICTI의 논의 중에서는 먼저 올려진 이유와 부시, 블레어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명령한 사실이나 부시의 주장내용은 미국이나 세계의 미디어를 통해 크게 선전된 공지의 사실이고 그 변호를 위해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변호인은 붙이지 않고, 아미카스큐리에방식을 채용했습니다.